

# 전국규모연맹체규정

제정 2018. 2. 27.  
개정 2019. 2. 28.

##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대한요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전국규모연맹체(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전국규모연맹체의 명칭은 소관 영역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한국○○연맹(또는 협회)이라 하고,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에 등록된 해당 영역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협회가 지향하는 요트종목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맹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협회의 정관, 관련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준수한다.

**제3조(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국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영역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해당 영역에 관한 국제 대회 개최 및 참가
3. 해당 영역의 협회 등록팀, 클럽 등 단체의 지도와 지원
4. 해당 영역 대회 개최 및 주관

5. 해당 영역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해당 영역의 선수 및 동호인, 지도자 등의 양성
  7. 해당 영역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8. 해당 영역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해당 영역의 국제 규정, 규칙 및 지침 번역 및 연구
  10. 해당 영역 가맹 국제기구와 교류
  11. 해당 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해당 영역 진흥 및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연맹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회개최를 할 수 있다.

##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협회에 등록된 학생부 등록팀, 일반부 등록팀 또는 클럽팀을 포함한 동호인조직(이하 “회원단체”라 한다)은 연맹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연맹에 대한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협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

1. 협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협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②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갖는다.

1.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연맹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할 의무
3. 소관 지회 및 회원단체가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

**제6조의2(관리단체의 지정)** ① 협회는 연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미리 해당 단체가 소속된 국제기구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정관 등 제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2. 60일 이상 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국제기구와 관련한 각종 분쟁
  4. 회원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 ② 협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연맹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관리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제3장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단체의 회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연맹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수가 9명 미만일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회원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⑥ 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⑦ 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단체의 회원가입 및 제명

3. 연맹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연맹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이사회는 연맹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의 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은 총회 의결과 협회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소집)** ①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 등 직능별 대표인사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연맹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연맹의 임원은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전문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할 때 협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맹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협회 정관 제19조를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연맹 기탁금의 금액 등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협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① 연맹은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 기준은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맹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연맹이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연맹의 임·직원은 협회의 회장선거, 연맹 및 다른 전국규모연맹체, 시·도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회, 연맹 및 다른 전국규모연맹체, 시·도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연맹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맹의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협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해당 영역 선수 또는 생활체육 동호인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⑦ 연맹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⑧ 연맹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연맹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전국규모연맹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연맹의 임원이 다른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③ 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전국규모연맹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

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연맹의 임원이 연맹 또는 협회, “다른 전국규모연맹체, 시·도협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협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연맹의 임원이 연맹 또는 협회, 협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연맹의 임원이 연맹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시·도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연맹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전국 규모연맹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협회 스포츠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협회 이사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연맹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7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회원단체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각종위원회**

**제2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기술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29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연맹은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정관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이 설치하는 제28조 및 제29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재원)** 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참가비 등)

**제33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협회, 연맹, 다른 전국규모연맹체, 시·도협회 및 회원단체의 임직원
2.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협회, 연맹, 다른 전국규모연맹체, 시·도협회 및 회원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36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의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등)** ① 연맹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연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의2(협회의 감사·징계 등)** ①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국규모연맹체와 회원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체육회가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협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협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협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체육회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협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협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협회 ‘감사규정’ 과 ‘스포츠 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⑥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전국규모연맹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협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
- ⑦ 협회가 제6항에 따라 신규 전국규모연맹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의 이사로 한다.

## 제8장 사무국

- 제39조(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사무국장(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연맹(‘시·도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6조, 협회 정관 제2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국장 등 직원(시·도 회원단체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40조(사무국의 운영 등)**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장 보칙

**제41조(해산)** ①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협회의 승인 취소로 해산한다.

②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허가를 받아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2조(규약변경)** ① 연맹의 규약(법인인 경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협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가 연맹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규정 제·개정 등)** ① 연맹은 협회 전국규모연맹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연맹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정의 해석)** ① 전국규모연맹체 규정은 연맹의 규약에 우선하며, 연맹 규약을 전국규모연맹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연맹의 규약과 전국규모연맹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국규모연맹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연맹이 협회의 정관,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5조(제한사항)** 연맹이 협회의 정관 및 전국규모연맹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협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협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에 따른다.

**제46조(경영공시)** ①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과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47조(대한장애인요트연맹)** ① 대한장애인요트연맹의 명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된 명칭을 사용한다.

② 대한장애인요트연맹은 이 규정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부 칙(2018. 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연맹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대한체육회의 대한요트협회의 산하 한국원드서핑·카이트보딩협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원드서핑·카이트보딩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한체육회의 대한요트협회의 산하 한국원드서핑·카이트보딩협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원드서핑·카이트보딩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연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연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 제21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 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9. 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